제58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5. 5. 16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5. 5. 16. (금) 15:30 ~ 18:00

○ 출석위원(12명)

- 민간 위원장 (주재)

- 민간위원 : 강영철, 고동수, 박선규, 박익수, 오균, 우윤석, 이민창, 이혁우, 정진경, 조원동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분
①	2025-193	국조실	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(안)	의결
②	2025-194	국조실	2023·2024년 재검토 규제 정비 점검 결과 및 2025년 재검토 규제 심사 진행 현황	보고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(안)(국조실, 2025-193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**가 **심의·조정** 후 **권고**('25.3.25)한 '**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판매 가능 약효군 확대**(13개 추가 허용)'에 관한 **복지부**의 **이견 제출**('25.4.4)로 **규개위 재심의 결정**

○ (**복지부 의견**)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스마트 화상판매기 판매 가능 약효군으로 **추가 허용**을 **권고**한 **13개 약효군 가운데 5개*** **약효군**에 **한하여만 판매 확대 허용**을 검토

* 건위소화제, 외피용살균소독제, 이담제, 치과구강용약, 기타의 순화계통약

- **판매 불수용 8개 약효군***은 **개별 의약품별**로 **안전성**에 대한 자료 축적, **재평가** 등을 거쳐 스마트 화상판매기 내 **판매**를 **검토**할 **필요**

* 사전 피임제, 이비과용제, 수면 유도제,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등

○ (**과기정통부 의견**) 확대된 판매 대상 일반의약품 **13개 약효군**은 **오·남용 및 부작용 우려**가 **적다고 판단**되므로 **권고대로 확대** 필요

□ **논의사항**

○ 실증특례 부여 후 운영 중인 **스마트 화상판매기**의 **사업실적** 및 **안전성** 등을 **종합**적으로 **평가·검토**하여 **규개위**에 **재보고**할 필요

○ **안전성**이 **입증**된 **제품**은 화상판매기를 통한 **판매**가 될 수 있도록 **쟁점 전환**이 **필요**하며 이에 **추가**적인 **이해관계자 의견 청취**가 바람직

□ **심의결과** :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바, 추가 논의를 위해 **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결**

2. (보고) 2023·2024년 재검토 규제 정비 점검 결과 및 2025년 재검토 규제 심사 진행 현황(국조실, 2025-194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'23년·'24년 재검토 규제 정비 점검 결과**

- '**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 허용**'('24.5), '**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**'('24.8)' 및 '**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**('24.12)' 완화 등 **조치 完**

○ **'25년 재검토 규제 심사 진행 현황**

- '25년 **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총 1,545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국민·경제단체 의견수렴**(3.17~4.25) 완료

- **민간전문가 TF·규개위원 검토**(~7월말) 거쳐 **분과위 심의**(9월) 및 **본위원회 상정·의결**(10월) 추진

□ **논의사항**

○ 재검토 규제 **정비 이행**을 위한 **주기적인 점검**은 **지속 실시 필요**

□ **심의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